

제 호

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

1. 기관 또는 단체명:

2. 대표자:

3. 주 소:

위 기관 또는 단체를 「발명진흥법」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지식재산처장

직인